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은림 의원(찬성자:21명)

나. 의안번호 : 제 2327 호

다. 발의일자 : 2025. 01. 17

라. 회부일자 : 2025. 02. 06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의 급식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력, 시설 등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무자들의 사기 증진과 본연의 소방 사무에 집중하여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근무자, 급식환경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에게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 및 급식제공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토록 함(안 제5조)

마.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바. 그 밖에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2. 11.~2. 15.)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에 대한 급식의 질이 각 소방기관마다 편차가 나타남에 따라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환경을 조성코자 급식 지원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의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목 차	주 요 내 용
안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정의)	· “소방기관”, “근무자”, “급식환경”의 용어 정의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서울종합방재센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소방학교·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 포함)·119특수구조단·시민안전체험관 등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소방보조인력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시장에게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함.
안 제4조 (지원사업)	· 시장에게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지원 3.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 (협의체 구성·운영)	·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6조 (실태조사 등)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1. 구내식당 급식환경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개선사항 2.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소속 근무자의 만족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7조 (시행규칙)	·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 운영 현황

- 현재 서울소방의 현장 출동 소방관은 24시간 교대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속한 긴급출동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을 이용한 식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관내 소방기관 133개 중 129개의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취사 인력의 인건비와 식자재 구입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 포함),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수난구조대(반포·여의도·뚝섬·광나루), 서울소방학교, 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 보라매), 소방서(25개소), 안전센터(94개소) 등에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직영운영이 126개소, 위탁운영은 2개소(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미운영 1개소(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임.

[표 2] 2025.1. 기준 서울시 소방기관 구내식당 현황

(단위 : 개)

소방기관	서울소방재난 본부·서울종합 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소방서	안전센터	119특수구조단	시민안전체험관
구내식당 설치개소	1	1	25	94	6	2
운영방식	위탁운영		직영운영 (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은 현재 미운영 중)			

※ 미설치 소방기관 : 119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북한, 도봉, 관악), 대통령경호처소방대

- 직영운영의 경우, 공무원 영양사(소방서 25개소에 각 1명씩 배치)의 인건비¹⁾를 제외한 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1인당 월 14만 원) 내에서 개인별 식수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산정한 각출 금액을 활용하여 조리인력 인건비, 부식비, 공공요금 등²⁾을 충당하고 있으며,
- 현장출동부서가 있는 126개소(소방서 25개소, 안전센터 94개소, 119 특수구조단 7개소)의 소방기관에는 1개소당 월 200만 원씩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비³⁾를 추가적으로 지원 중임.

[표 3] 2025.1. 기준 서울시 소방기관 직영운영 구내식당 운영 현황

구 분	영양사(공무직)	조리인력		
		소계	직고용	용역
인 원	25명	179명	168명	11명
대 상	25개 소방서 각 1명씩 배치	■ 소방서 각 3명(강북, 서초, 동대문은 4명) ■ 안전센터,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반포·여의도·독섬·광나루 수난구조대 각 1명		
운 영	공무직 예산지원(무기계약직 보수)	기관별 직원 각출금액으로 조리인력 인건비 지급		

1) 공무원(영양사) 인건비(25개소 소방서)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지원금액	813,000	732,000	710,040

2) 소방기관 평균 식당 운영 경비 현황(2024년도 기준)

구 분	계	식자재 구입비	인건비(조리인력)	공공요금 등 기타잡비
단 가	4,608원	1,613원	2,534원	461원
비 중	100%	35%	55%	10%

3)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비

- 지원배경 : 현장출동부서의 출동대기직원 급식지원을 위한 부식재료 구입비 편성('07년~)
- '25년 예산액 : 금4,224,000천원
 - 지원대상 : 126개소(본서 25, 안전센터 94, 특수구조단 7)
 - * 특수구조단 중 급식시설 없는 산악구조대 3개대는 통합
 - 지원단가(월) : 본서(6,000천원), 안전센터(2,000천원)

- 다음으로 위탁운영의 경우, 먼저 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는 식권(내부직원 4,900원, 외부인 5,900원) 수익을 통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소방학교는 신규 및 기존 직원 교육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식대 단가와 식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위탁업체에 지급하여 운영하는 형태임.
- 한편, 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은 2018년 소방관서 개선사업을 통해 구내식당을 설치했으나 내부 식수 인원이 약 7명 내외로 적어 조리인력 고용 시 발생하는 개인별 각출 금액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외부 식당을 이용하고 있음.

■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

-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 속에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균등한 급식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이에 서울시는 관내 소방기관에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근거 없이 각 소방기관의 자율성에 의존해 운영되면서 조리인력의 고용 조건, 개인별 각출 금액, 급식 단가 등에서 기관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 본 제정안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급식 운영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소방공무원 복지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는 “소방기관”, “근무자”, “급식환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소방학교·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를 포함한 다)·119특수구조단·시민안전체험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원직 근로자, 사회복지무원, 소방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소방기관”을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학교,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를 포함한 소방서, 119특수구조단, 시민안전체험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에 조직된 소방기관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는 ‘근무자’를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공무원직 근로자, 사회복지무원, 소방보조인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기관 내 다양한 형태의 근무자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급식 운영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판단됨.

- 안 제2조제3호는 ‘급식환경’을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안에서 급식환경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에게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6호4)에서 식당을 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5)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본 조항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상응하는 조치라 사료됨.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이하생략)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다.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지원사업)는 시장에게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 및 급식제공에 필요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지원’,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 및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지원
3.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먼저, 안 제4조제1호의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은 현재 25개의 소방서에 각 1명씩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공무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 또한, 별도의 조리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없는 현행 체계에서 각 소방기관이 식수인원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리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배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급식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관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호는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노후화나 집기류 부족은 급식

의 위생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적절하다 할 것임.

- 다만, 소방기관마다 구내식당 노후도와 개선 필요성이 상이하므로 시설 개선과 집기류 교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4조제3호의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은 비상출동을 대비한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운영하는 소방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로, 주간에는 영양사와 조리인력 지원이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부식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야간 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라 하겠음.
- 더불어, 서울시가 현재 현장출동부서가 있는 소방기관에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존 지원 체계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라.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안 제5조)

- 안 제5조(협의체 구성·운영)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토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 이는 소방기관의 장이 구내식당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소속 근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하겠음.
- 다만, 협의체가 단순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논의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 방식과 운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마.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6조(실태조사)는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소방기관의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내식당 급식환경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개선사항’,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소속 근무자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6조(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내식당 급식환경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개선사항
2.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소속 근무자의 만족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는 소방기관 구내식당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안 제5조에 따른 협의체의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소방기관에 설치된 129개의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급식환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 소방기관 근무자들이 직접 급식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급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시행 과정에서 급식환경 실태조사와 협의체 운영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식에 있어 소방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